

제304회 임시회

2011.10.27(목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0. 27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 헌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10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(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 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

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2조)
-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(안 제3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송장섭)

-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"기업애로지원 ombudsman"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업지원정보 시스템 『e-기업사랑센터』 운영
4. 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 『기업SOS』 운영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기업”이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.</p> <p>2. “기업인”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.</p> <p>3. "기업지원 관련단체"라 함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"기업애로지원 ombudsman"이라 함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란</u> ----- -----.</p> <p>4. "<u>기업애로지원 ombudsman</u>"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3조(책무) 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| <p>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| 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협의회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~ ② (생략)</p> | 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|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업지원정보 시스템 『e-기업사랑센터』 운영</u></p> <p>4. <u>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 『기업SOS』 운영</u></p> |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